

의안번호	2209998
의 퇴 인	이만희의원
회 답 일	2025.6.5.
추계번호	25D2939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6억 9,600만원, 2030년 27억 8,5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134억 5,500만원(연평균 26억 9,1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와 지원조직 설치(안 제5조 등)	2,696	2,596	2,658	2,720	2,785	13,455	2,691

주: 1.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위원회와 지원 조직 설치(안 제6조 등)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 등	국가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지원조직을 둠	의무규정
2	안 제8조 (손실의 보상)·제18조(배상금의 지급) 등	국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참여함으로써 인하여 본인의 사업장 운영, 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함(안 제8조)	의무규정
		국가는 「국가배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대위변제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함(안 제18조·제19조)	의무규정
		국가등은 보상금, 배보상금을 지출한 경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69조)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22조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국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과 관련하여 피해지역의 경제재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산불피해복구 특별회계의 설치 등의 특별지원방안 등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22조)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주민에게 주거지원금,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신속한 주거공급을 위하여 임시주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용을 지원해야 함(안 제24조)	재량규정 의무규정
		국가는 피해지역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의 재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 함(안 제26조)	의무규정
		국가 등은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산업단지 및 공장에 기반시설의 복구 등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7조)	재량규정
		국가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로 발생한 농업·임업·수산업에 대한 시설·장비 및 작물의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지원하여야 하고, 농림어업인에 대한 생산기반 복구 및 소득 보전을 위하여 생산기반 복구 지원 등을 하여야 함(안 제28조)	의무규정
		국가 등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한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안 제34조)	의무규정
		국가는 피해자가 산불로 인하여 악화된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하여 의학적 검사 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안 제35조)	의무규정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해야 함(안 제37조)	의무규정
		국가는 피해지역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함(안 제38조)	의무규정
		국가 등은 초대형산불로 인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피해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 등을 위하여 추모공원의 조성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국가는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39조)	재량규정 의무규정
		초대형산불의 진화작업 등을 하다가 사망한 공무원 외의 자는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안 제40조)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41조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등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회복	국가 등은 산불고위험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는 대응장비 등을 우선 배치하고 토지 소유자 등이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41조)	의무규정
		국가는 인공지능(AI) 기반 산불예측 시스템과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민관협력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안 제42조)	의무규정 재량규정
		지방자치단체는 “마을 산불위험지도”를 작성·활용하여야 함(안 제43조)	의무규정
		국가 등은 산불대응체계의 혁신과 피해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하여 시범사업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안 제44조)	재량규정
		국가는 산불예방과 효율적 진화 등을 위하여 감시시스템을 활용한 산불 감시 인프라 구축 등 장비 구입·임차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45조)	의무규정
		국가 등은 강풍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맞춤형 장비를 개발 및 도입하여야 함(안 제46조)	의무규정
		국가 등은 산불 등 대형 재난에 대비하여 구호물품을 사전에 비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함(안 제47조)	의무규정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 등은 일정규모 이상의 산사태 위험구역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국가는 재해예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함(안 제48조)	의무규정
		국가 등은 지역주민의 산불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기적인 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참여하는 주민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49조)	의무규정 재량규정
		지방자치단체는 산불·산사태 등 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 지원 등을 위한 “마을순찰대”를 운영할 수 있고 국가 등은 마을순찰대에 교육훈련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음(안 제50조)	재량규정
		국가는 산불 예방, 조기 발견, 효과적 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51조)	의무규정
		국가는 대형산불로 인하여 발생한 산불폐기물의 처리 등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여야 함(안 제52조)	의무규정
		국가 등은 대형산불 등 피해지역에서 위험목 제거사업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시행할 수 있음(안 제53조)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국가 등은 산불·산사태 등 산림의 피해지역 내 임도를 설치하려는 경우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54조)	재량규정
		국가 등은 피해지역을 산림경영특구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55조)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영농모델 운영에 필요한 공동경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을 지원 할 수 있음(안 제57조)	재량규정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의 산림 회복과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8조)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지역에 대하여 생태적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안 제59조)	재량규정
5	안 제62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국가는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및 재건을 위하여 초대형산불 피해복구 및 지역재건 특별회계를 설치	의무규정
6	안 제64조 (증액교부금 지원)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재정상 부득이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와는 별도로 증액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조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 등	○	—
2	안 제8조 (손실의 보상)·제18조(배상금의 지급) 등	X	위원회의 배상금 지급 결정 건수, 평균 지급액 등이 필요하나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가 대위하도록 규정하여 재정수입의 증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평균 손해배상금 청구액과 납부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산불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국가 등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원인을 제공한 자의 특정 여부, 구상권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3	안 제22조 (피해지역에 대한 경제재건 및 활성화 지원) 등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X	특별지원 방안의 내용과 범위, 특별지원 방안별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주거지원금, 임시주거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나, 현행 관련 법령에 따라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있고 임시주거시설도 운영되고 있어 중복 지원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제정안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건수, 평균 복구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산업단지 기반시설 등의 복구 건수, 평균 복구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시설 등의 피해 건수 및 평균 복구 비용, 생산기반 복구 지원 건수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피해자 심리상담 건수, 기타 지원 방안,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심리적 증상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 대상자 수, 항목별 평균 검사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치유휴직 신청자 수, 인정 비율, 휴직자 별 평균 고용유지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공동체복합시설 부지선정 및 면적, 부지매입비 발생 여부, 운영 인력의 신규 채용 및 기존 인력 재배치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추모공원 규모, 재정적 지원 항목 및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공무수행사망자 수, 특례 적용에 따른 1인당 지급금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4	안 제41조 (산불고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등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회복	X	산불고위험지역 지정 건수, 해당 지역 내 산불 예방 등의 조치 건수 및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인공지능 기반의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관련 장비 및 프로그램 구매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마을산불위험지도 작성 건수, 평균 작성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산불대응체계 혁신 등을 위한 시범사업 내용 및 규모, 평균 사업비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추모공원 규모, 재정적 지원 항목 및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산불 감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비와 시설 등의 종류, 종류별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산불진화를 위하여 추가 확보가 필요한 장비와 시설 등의 종류, 종류별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구호물품별 추가적으로 비축이 필요한 수량 및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재해예방시설 설치 수량, 평균 설치 비용, 지원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기존 산불대응 훈련 등의 확대 여부, 인센티브 제공 건수 및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마을순찰대의 평균 인원, 지원 항목별 수량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기존의 산불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확대 여부, 평균 연구개발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산불폐기물 처리 건수, 평균 복구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위험목 제거사업 건수, 평균 사업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임도 설치 건수, 평균 설치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산림경영특구 선정 건수, 평균 지원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공동경작을 위한 장비 및 시설의 종류별 수량, 평균 비용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복구계획을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
5	안 제62조(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X	특별회계 조성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재원 항목별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6	안 제64조 (증액교부금 지원)	X	증액교부금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증액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제정안에 따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배상 및 보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에 한하여 추가재정 소요 추계
- 제정안에 따른 위원회 지원조직의 정원은 총 32명이고, 파견 공무원 10명을 제외하여 총 22명이 신규 채용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에서 위원장 및 위원의 상시 근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본 추계에서는 비상근으로 활동하며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위원회 지원조직의 정원은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2025.3.27.~5.15) 기간 동안 지원인력으로 107명의 공무원 등이 근무한 점, 위원회의 업무범위(피해 보상 관련 심의·의결)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간 근무인원의 30%인 32명으로 가정
- 행정안전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에서 10명의 공무원을 파견받는 것으로 가정하면 지원조직 설치에 따라 증원되는 공무원은 총 22명
 - － 유사사례인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국 정원 중 파견공무원 비 31.4%를 적용하면 10명(=정원 32명×31.4%)으로 추정
- 유사사례인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안을 참고하여 직급별 인원, 1인당 보수, 기본경비 비율 등을 적용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¹⁾
- 공포 후 즉시 시행하도록 한 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위원회 지원조직 설치를 위하여 22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보수, 기본경비, 기관부담금, 자산취득비), 사무실 임차료로 한정하여 추계

가. 민간위원 참석수당

-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 수, 참석수당, 개최횟수를 곱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
 - 제정안에서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5.4)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5%	5.1%	3.6%	2.3%	1.9%	2.0%	2.0%	2.0%

정하였고, 본 추계에서는 50%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월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인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하면, 회의 참석수당(안전검토 포함) 40만원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매년 9,600만원으로 추정

- 회의 참석수당: 9,600만원 = 5명×40만원×월 4회×12개월

나. 지원조직 설치

□ 22명 공무원 증원에 따른 비용의 경우, 직급별 인원에 직급별 보수를 곱하여 총 보수를 산출한 후, 기본경비 비율, 기관부담금 요율, 1인당 자산취득비를 곱하여 산출

- (보수) 2026년 15억 4,900만원, 2030년 17억 400만원으로 추정
 - 신규 채용되는 인원은 총 22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4명, 6급 10명, 7급 5명)
 - (1인당 보수) 2025년 기준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직급별²⁾ 보수에 추계기간 동안 공무원 보수 상승률³⁾ 적용
- (기관부담금) 2026년 2억 300만원, 2030년 2억 2,800만원으로 추정
 -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값 적용⁴⁾
- (기본경비) 2026년 6억 3,500만원, 2030년 6억 9,900만원으로 추정
 -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2025년 기준 기본경비 비율은 41%이고 추계기간 동안 동일
- (자산취득비) 2026년 1억 5,900만원
 - 자산취득비는 2026년에만 발생하며 정원 32명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4,981,000원⁵⁾을 곱하여 산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년 예산안 각목명세서

3) 2023~2025년 평균 상승률 2.4%를 적용

4) 2026년 13.1%, 2027년 13.1%

5) 국회예산정책처 정책연구용역 결과, 2020년 기준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는 4,197,000원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연도별 1인당 자산취득비 산출

[표 2] 보수·기관부담금·기본경비·자산취득비 추정: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인당 보수 (단위: 원)	고위	138,283,291	141,602,090	145,000,540	148,480,553	152,044,086
	4급	104,292,041	106,795,050	109,358,131	111,982,726	114,670,311
	5급	83,335,447	85,335,497	87,383,549	89,480,754	91,628,292
	6급	62,712,783	64,217,890	65,759,119	67,337,338	68,953,434
	7급	48,456,006	49,618,950	50,809,805	52,029,240	53,277,942
보수 (단위: 백만원)	고위(1명)	138	142	145	148	152
	4급(2명)	209	214	219	224	229
	5급(4명)	333	341	350	358	367
	6급(10명)	627	642	658	673	690
	7급(5명)	242	248	254	260	266
	소계(a, 22명)	1,549	1,587	1,626	1,663	1,704
기관부담금(=a×요일, 백만원)		203	208	215	221	228
기본경비(=a×41%, 백만원)		635	651	667	682	699
자산취득비(단위: 백만원)		159	—	—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사무실 임차료의 경우, 정원,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보증금, 월세, 관리비 등 포함), 임차기간을 곱하여 산출

○ 위원회 지원조직의 정원은 32명이고 1인당 월평균 환산임대료는 14만원⁶⁾

[표 3] 위원회 지원조직 사무실 임차료 추정: 2026~2030년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1인당 월평균환산임대료(a, 만원)	14	14	14	15	15
사무실 임차료(=a×32명×12개월, 백만원)	54	54	54	58	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2023년도 연구용역보고서(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 단가 현황 연구), 63쪽」의 임차청사 1인당 월평균 환산임대료 130.2천원/명을 참고하였고, 추계기간 동안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 추계결과, 위원회 지원조직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6억 원, 2030년 26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위원회 지원조직 설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보수 등	보수	1,549	1,587	1,626	1,663	1,704	8,129
	기관부담금	203	208	215	221	228	1,075
	기본경비	635	651	667	682	699	3,334
	자산취득비	159	—				159
	소계	2,546	2,446	2,508	2,566	2,631	12,697
사무실 임차료		54	54	54	58	58	278
합계		2,600	2,500	2,562	2,624	2,689	12,97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원조직을 설치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6억 9,600만원, 2030년 27억 8,5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총 134억 5,5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위원회 구성	96	96	96	96	96	480
위원회 지원조직 설치	2,600	2,500	2,562	2,624	2,689	12,975
합계	2,696	2,596	2,658	2,720	2,785	13,45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로 10·29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참고하여 직급별 인원, 1인당 보수, 기본경비 등을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 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고,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